

March 0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24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2. 24. ~ 2. 28.)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 발표

2020. 2. 24.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이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제31기 제2차 총회 결과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한국: 금융정보 활용 및 범죄 수익 환수 성과 좋으나,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 강화 및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 개선 필요), ②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 채택 및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위 지침서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③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년 2월 FATF총회 개최결과](#)



[금융위2] 핀테크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2020. 2. 25. 핀테크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간편결제 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②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③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계좌이체,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금융결제 관련 가명 익명 정보) 빅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추진, ④ 2분기 내 9개 금융공공기관(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배포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첨_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배포](#)



[금융위3]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0. 2. 25. 2020년 업무계획의 세부적 추진과제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자금지원(40조원), ②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Paydex 개발, ③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증 프로그램 도입, ④ 판매기업(하청업체)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신설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첨_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국토부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2020. 2.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함(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 구체적 내용으로 ①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 ②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현행: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 생략 등이 있음

[\[참고자료\] 중대 변경요건에서 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 지역개발 속도 낸다](#)



[국토부2]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시행

2020. 2. 27.부터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를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가능, ②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 가능, ③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 2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산자부1]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2020. 2. 26.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핵심전략기술분야 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에 대해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 기업’과 연계하여 R&D, 투자펀드, 세제 등 종합지원, ②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등 ‘20~’26년간 약 4천억원 투자, ③ DNA를 적용한 첨단기술 개발 지원(266억원) 및 중견 건설기계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장기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참고자료\] 붙임_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산자부2] 2020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계획 공고

2020. 2.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공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 투자 추진, ②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 도입, ③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메가와트),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집중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산자부3]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추진

2020. 2. 27.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 ② 탄소인증제 세부 검증기준 마련 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 ③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에 참여시 우대 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과기부]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 발표

2020. 2. 2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ICT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 기업 지원(기술료 유예 및 감면 등), ②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 촉진, ③ 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추진, ④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수출바우처 제공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 발표



[문체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

2020. 2. 24.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약 40억원 규모의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을 공모함(마감: 2020. 5. 8.). 주요 내용으로 ①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구역, 거리 대상으로 스마트관광요소 실증 적용, ②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여 지자체 민간 주도형 스마트 관광기반 마련, ③ 예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 및 사업 계획 컨설팅 지원(3개소, 각 1.5억), 최종 선정지에 대해 스마트 관광요소 구현 예산 지원(1개소, 35억) 등이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



* 2020년 주요 부처 업무보고(추가)

부처	내용	첨부파일
국토부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 양양 무안 공항을 지정하여 항공 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 및 지역특화 산업과 도시 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 추진 - 세종 국가시범도시 7월 중 착공 및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 확대(10곳→18곳) -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 연내 착공	 국토부_2020년 주요 부처업무 계획
해수부	2월 중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본격 시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사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 - 해양바이오, 수중로봇 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	 해수부_2020년 주요 부처업무 계획

2. 주요 입법(안) 동향 *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2항이 인터넷회선 감청의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임.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올바른 감청 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이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청을 집행할 때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